

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한명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55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. 15.

발 의 자 : 한명훈 의원 외 13명

1. 제정이유

-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,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)
- 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2조)
-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 ~ 제4조)
- 보조금 부당 수령 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5조)
- 행정자료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)

6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붙임1

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,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사업 등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 제 14조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(이하 “행정동우회”라 한다)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1.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·연구와 회보 발간
2.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
3.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
4.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
5.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
6.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실적보고 등)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자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의 반환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.

제6조(행정자료제공 지원 등) ① 행정동우회는 안산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.
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7조(준용)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 한명훈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6)